

##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2, 각론-1)

- 거짓의 산과 외면당한 진실들 -

사        건        2018 도 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 고 인        박 근 혜  
제 출 인        「거짓과 진실」 대표기자 우종창 외 5인

위 사건에 관하여 제출인은,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각론-1)/거짓의 산과 외면당한 진실들」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I. 최초 고발인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정체와 묘한 시점에 제출된 고발장

1. 한겨레신문 보도 9일 후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

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라 ‘이 사건’이라 합니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민주노총과 행동을 같이하는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을 2016. 11. 20. 기소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 목록」에서 확인됩니다.

나. 「기록 목록」은 검찰이 수사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때, 수사 내용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마다 별도의 제목을 붙여 정리한 색인(索引)입니다. 「기록 목록」은 수사 기록이 방대할 경우에 기록 맨 앞에 첨부됩니다. 때문에 기록목록만 읽어도 검찰이 언제 무슨 내용(예컨대 핸드폰 통화 내역이나 은행계좌 조회 등)을 수사했고, 누구를 조사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A4



용지로 3만 페이지에 이르는 최서원 사건의 「기록 목록」에서 맨 첫 부분에 해당하는 제1권, 제1페이지의 시작이 「투기자본 감시센터」 고발장입니다. 이 고발장이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그 당시 국내 상황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이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되기 두 달 전인 2016. 7. 6. TV조선에서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김종 문체부 2차관이 막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날 TV조선은 「국가브랜드 재탕 짜깁기 영상에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기사에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등장시켰고, 7. 11.에는 「늘품체조 때도 나눠먹기 드러났다」며 차은택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라. TV조선이 미르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된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것은 2016. 7. 26.입니다. 기사에는 안종범(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기금 모금에 관여했다는 내용은 언급돼 있지만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TV조선에서 보도한, 일련의 「기획 폭로」는 미르재단이 마치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일해재단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 만든 것인양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최초 등장한 것은 2016. 9. 20. 한겨레신문을 통해서입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단독/‘권력의 냄새’ 스멀...실세는 정윤희가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기사에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최순실이 최태민의 다섯 번째 딸이라는 것, 최태민은 새마을봉사단의 실세로 알려져 있다는 것, 최순실은 1996년 정윤희와 결혼해 승마 선수인 딸 정 아무개(20)를 낳았다는 것” 등으로, 세간에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겨레신문 보도는 제목이 선정적이었지, 왜 최순실이 권력의 핵심 실세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



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에서 최순실 이름을 거론하고 9일이 지난 후,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것입니다.

## 2. 고발인 「투기자본 감시센터」와 민주노총과의 연관성

가. 고발장을 제출한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2004. 8.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는 오세택, 김영준, 윤영대 등 3인이고, 사무실은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 민주노총 서울본부건물 3층에 있습니다. 이 땅과 건물의 소유주는 서울시입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창립선언문 말미에 “투기자본의 횡포에 저항하는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과 호흡을 함께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연대를 모색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여, 노동자 투쟁 지원 단체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대의원 대회에서 “국고 지원금 및 정부 지원금은 건물, 토지 등 부동산과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한다”라고 결정한 뒤부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2013년에 3억 8천만 원, 2014년 3천6백만 원, 2016년에는 1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던 2007. 무렵, 론스타의 주가조작을 고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의 당시 대표 장화식이 법정 구속된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중지하는 대가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바 있습니다. 장화식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3. 촛불시위는 고발장이 제출되고 한 달 후부터 시작

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에서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을 조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고소장 혹은 고발장입니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고, 고발장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누구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문서입니다. 어쨌든 고발장이 접수됨으로써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8부(부장 한웅재 검사)에 배당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고발장이 제출되고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인 2016. 10. 29.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제1차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촛불집회가 고발장 제출 후 한 달 만에 등장하게 된 것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집회 시작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 때문입니다. 고발장 제출과 촛불집회는 이처럼 시간적으로 절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다. 야당과 좌파세력이 대통령 하야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촛불집회를 통해서입니다. 촛불의 등장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최순실이 모든 국정을 농단했다는 괴담과 선동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도 적시돼 있지만, 「세월호 7시간 괴담」은 촛불 참가자들의 단골 구호였습니다. 결국, 한 통의 고발장이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특검 발족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도화선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 4.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 수는 86명

가.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고발한 사람은 안종범, 최서원을 포함하여 재단



##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짓의 산

법인 미르 대표 및 이사,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재단 대표 및 이사, 전경련 회장단과 64개 대기업 대표 등 총 86명입니다.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기재돼 있으나 피고발인은 아니었습니다. 피고발인 86명의 죄명은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와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였습니다.

나. 피고발인 86명은 미르재단의 경우, 김형수 대표, 김영석-조희숙-송혜진-이한선-장순각 이사, 채미옥 감사, 이성한 사무총장이고, K스포츠재단은 정동춘 대표, 김필승-이철원-주종미 이사, 정현식 사무총장입니다. 전경련 회장단은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부회장이며, 64개 대기업은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6개 계열사 대표,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5개 계열사 대표,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4개 계열사 대표,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4개 계열사 대표 등과 대한항공그룹, 두산그룹, CJ그룹, 대림산업, 금호아시아나,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부영주택 회장과 대표이사 등 대한민국의 중견 기업들입니다.

다. 고발장은 A4 용지로 총 18페이지입니다. 피고발인 명단이 4페이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범죄사실이 7페이지이고, 나머지 7페이지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제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개혁법」 개정 등을 추진했는데, 이에 극력하게 저항한 단체가 민주노총입니다. 고발장 내용의 절반이 민주노총 주장을 담은 것입니다.

라. 고발장에 기재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범죄사실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의자 전경련 회장 허창수와 부회장 이승연(이승철의 오기로 보임)은 정부 발주 각종 사업에서 계약이나 인허가, 금융지원의 특혜, 내부자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당거래나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지원을 받거나, 만약 적발되었을 때는 수사에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는



##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짓의 산

사면 복권 가석방을 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 ② 피의자 안종범은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경제수석(현재 정책조정수석)으로, 최순실은 오직 대통령을 위하여 40년간을 사적으로 헌신해 온 대통령의 분신인데, 안종범, 최순실은 전경련 회장 허창수와 차은택, 김형수 등과 공모하여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여, 탐욕에 끝이 없는 재벌들인 삼성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원샷법 제정 등의 협조를 요청받고 866억 원의 포괄 뇌물을 수수하고 원샷법 제정을 관철시켰다, ③ 대통령은 과거 일해재단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기업으로부터 866억 원을 수수하고, 원샷법 등으로 수천, 수조원의 이익을 재벌에게 넘겨주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마. 고발장의 취지는, 안종범이 최서원과 공모하여 재벌들로부터 866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 돈을 받은 대가로 원샷법 등을 통과시켜 수천, 수조원의 이익을 재벌에게 넘겨주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샷법 통과가 최순실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고발장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바. 검찰 조사 결과, 안종범과 최서원은 이 사건 법정에서 처음 대면한 사이라는 게 확인되었고, 16개 기업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은 866억이 아니고 774억 원이었습니다. 때문에 고발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검찰 수사는 고발장 내용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고발장이 대단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기록 목록」 첫머리에 첨부해 놓고서도 고발인 대표를 상대로 하여 조사한 진술조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당시 여론을 감안하여 수사착수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광범위한 수사착수를 정당화하는 고발장이 제출되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5.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는 TV조선과 한겨레신문의 허위 기사

가. 고발장에 증거자료로 첨부된 것은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미르재단 관련 기사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에서 작성한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모금 현황」이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과 출연금 액수, 기부날짜 등이 도표로 표시돼 있는데, 검찰 수사 발표와 비교하면 액수와 지불날짜 등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나. 고발인이 오영훈 의원실에서 제공한 허위 자료를 증거물로 첨부하고, 자료 출처를 밝혀 놓았다는 것은 고발장이 야당 의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초 고발인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을 출신의 초선 의원으로, 국회 문체위(교육문화체육관광 담당 상임위원회) 소속입니다.

다.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2016. 10. 13. 추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합니다. 이는 「기록 목록」에 표시돼 있습니다. A4 용지 37장에 달하는 추가 고발장은 고발 취지와 범죄사실은 최초 고발장과 같으나, 차이라면 언론에 보도된 허위기사들을 입증자료라는 이름으로 대거 첨부한 점입니다. 2016. 9. 22.부터 2016. 10. 10. 사이에 한겨레신문과 TV조선에서 보도한 허위, 왜곡 기사가 대부분이고, JTBC, 노컷뉴스, 해럴드경제 기사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양이 A4 용지로 30페이지에 달합니다.

라. TV조선 이진동 기자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의겸이 이 사건 발생 초기에 보도한 기사들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을 엮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 조작했다는 점과 김의겸 기자에게 취재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이진동 기자이고 김의겸 기자에게 취재방향을 코치(조언)한 사람이 검사 윤석열이라는 사실은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緒)」에 이미 언급한바 있습니다.



6. 한겨레신문 김의겸 기자의 취재 경위와 특검 수사팀장이 된 윤석열

가. 한겨레신문 김의겸 기자가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된 경위는 한겨레신문 특별취재반이 지은 ‘최순실 게이트/기자들, 대통령을 끌어내리다’(2017. 4. 21. 발행) 라는 책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책 23페이지와 24페이지 사이에 적혀 있는 내용에 의하면, 김의겸은 2016. 8. 19.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한 날입니다.

나. 그 당시 김의겸은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문제 삼은데 대해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의겸은 “잇힐 만하면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지만 몇 차례의 취재 경험을 통해 전적으로 믿게 된”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책에는 취재원의 신분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인관계가 폭넓어 고급 정보가 저수지처럼 모이는 인물이다. 그래서 자신의 공식 업무가 아닌데도 어떤 사안은 내부자처럼 흔히 꿰뚫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다. 김의겸의 취재원이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석열입니다. 두 사람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2016. 8. 19.에 통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사 윤석열이 이보다 두 달 전인 2016. 6. 12. 일요일 저녁, 서울에서 이진동 기자를 만났다는 사실은 이진동 기자가 쓴 ‘이렇게 시작되었다/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에서 게이트까지’라는 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라. 검사 윤석열은 김의겸에게 이진동 기자가 보도하는 미르재단 의혹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윤석열이 김의겸에게 말한 내용은 책에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TV조선이 미르재단을 취재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바짝 긴장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면 대응을 할 수는 없다. 그만큼 미르재단에 약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격의 기회가 왔다. 엉뚱하게도 조선일보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땅 문제를 보도한 것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울고 싶던 차에 뺨 때려준 꼴이다. 미르재단은 모른 척하고 우병우 보도만을 문제 삼아 조선일보에 용단폭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마. 검사 윤석열의 조언을 받은 김의겸은 그로부터 2주 후인 2016. 9. 2. 이진동 기자를 서울 종로 르미에르 빌딩 지하의 한 음식점에서 만납니다. 두 기자는 대낮부터 소주 9명을 마시며 정권교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의기투합한 두 기자가 정권교체를 위한 목적으로 TV조선과 한겨레신문에 보도한 허위 기사들이 고발장의 근거로 둔갑했고, 이 고발장을 신호로 정권퇴진을 외치는 촛불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 한편,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2016. 11. 21.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특검 파견 수사팀장으로 기여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2016. 12. 2. 윤석열 검사가 특검 파견 수사팀장으로 지명됩니다.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자료가 된 언론기사의 생산 과정에 관여한 현직 검사가, 고발인이 희망하고 주장한 바에 따라 특검 수사의 실무를 총괄 담당하는 파견 수사팀장으로 지명되어 진행된 특검 수사는 그 태생부터 공정성의 근처에 갈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7. 고발인 진술조서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는 검찰의 의심스런 행태

가.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찰은 조사에 앞서 고발인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하는 게 수사의 기본입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12일이 지난 2016. 10. 11.에 「투기자본 감시센터」 대표 운영대를 상대로 고발인 진술조서를 받았습



니다. 고발인 진술조서는 고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입니다. 고발인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검찰이 고발인 의도대로 수사했다면, 이는 검찰의 수사와 공소권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중대한 쟁점이 됩니다.

나. 그런데 놀랍게도 검찰은 「기록 목록」에 버젓이 기재돼 있는 고발인 진술조서를 공개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여 공개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객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 특히 수사의 시작단계에서 고발인 대표를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라고 한다면, 공개재판주의의 헌법상 요청이나 검찰의 객관의무에 따라 법정에 제출하여 공개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017. 2. 26.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이 사건 검찰 수사 및 공소권 행사상의 중대한 문제점」이라는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고영태 등과 공모한 일부 언론인과 검찰 관계자, 그리고 정치인들이 연계되어 기획되고 추진되었다는,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현출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인 진술조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서원 피고인 측의 요청을 거부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라. 검찰이 고발인 진술조서의 제출요청을 거부하고 제1심 법원이 이를 묵살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시작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허위보도에 기초한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하여야 할 제1심 법원이, 구체적인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변호인의 요청을 묵살한 것은, 오로지 검찰과 특검이 설정한 구도로만 편향되게 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



이나 다름없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 II.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된 특검 수사의 불공정성과 위법·부당성

### 1. 원샷법 제정 취지와 민주노총이 반대한 이유

가. 고발장에 기재된 원샷법의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2015. 7. 9.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2016. 2. 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6. 8. 1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 및 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나.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함과 동시에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산업활력법」을 만들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은바 있습니다.

다.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한 이 법에 가장 반발한 계층이 민주노총입니다. 원샷법이 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주기 때문에 그 결과 70만 개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대표적인 뇌물 입법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주장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개혁법」 등 7대 정책과제들이 재벌들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줄기차게 반발해 왔습니다.



## 2. 고발장은 특검에 수사 방향을 제시한 이정표

가. 검찰의 제1기 특별수사본부(이하 '제1기 특수본'이라 합니다)는 이 사건 최초 수사에서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최서원 피고인에게 뇌물죄나 배임죄가 아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원샷법은 검찰 제1기 특수본에서는 수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특검 출범 후, 특검 수사팀장을 맡은 윤석열은 최서원에게 직권남용, 강요죄와 함께 뇌물죄를 추가 적용하였습니다.

나. 특검이 뇌물죄의 근거로 삼은 논리가 원샷법입니다. 특검은 고발장에 언급된 대로 이 사건을 정경유착이라 예단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대가성 뇌물이라는 가공의 논리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재단 출연금 774억에 삼성이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했다는 승마 뇌물 액을 합치면, 고발장에 명시된 뇌물 866억과 거의 일치합니다. 결과적으로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고발장은 특검에게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사하도록 수사 방향을 제시해 준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다.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검찰과 특검의 시각이 상이한 가운데, 특검 해체 후 특검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김수남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은 특검의 논리를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그대로 차용하였습니다. 검찰이, 자기들이 최초 수사했던 결론을 버리고 특검의 논리를 따랐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무능함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라. 그러면서 검찰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를 적용하였습니다. 법원이 특검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경우에 대비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처럼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은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혐의로 엮



은 특검 수사가 전형적인 견강부회(牽強附會)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3.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질 줄 미리 알았다는 특검의 해괴한 논리

가.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2014. 5.경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서둘러 진행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은 친 대기업 성향으로 평가되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 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그 첫 단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 특검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근거로 지레 짐작한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관련된 언론 보도는 모두 증거서류로 첨부했습니다. 그 양이 A4 용지로 무려 430여 페이지에 이릅니다. 예를 들면 ▲중간 금융지주회사 대안될까…숨죽인 재계(이데일리 2015. 8. 26.자), ▲이재용의 뉴 삼성 탄력 받나…힘 실리는 중간 금융지주사(뉴시스 2016. 11. 7.자),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검토…지배구조 개편 공식화(연합뉴스 2016. 11. 29.자) 등입니다.

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인 2013. 5.경,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2014. 2.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신경경색으로 쓰러진 것은 2014. 5.경입니다. 따라서 특검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1년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삼성그룹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재용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 4. 특검이 승계 작업과 관련 있다고 밝힌 10개 현안의 허구성

가. 특검이 공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된 개별 현안이라고 밝힌 것은 모두 10개입니다. ①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②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③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 ④ 삼성테크윈 등 4개 비핵심 계열사 매각, 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⑥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⑦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⑧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⑨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⑩ 메르스 사태 및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제 수위 경감 추진 등입니다.

나. 그러나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는 무관하게 추진된 것입니다.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은 불발에 그친 사안이고,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추진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으나, 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습니다.

다. 삼성테크윈 등 4개 비핵심 계열사 매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화그룹에 매각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는 어느 기업이든 살아남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사안입니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삼성이 스스로 포기한 사업입니다.

라. 이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성공,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삼성서울



##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짓의 산

병원이 소극적으로 대처했으나 제재 수위가 약한 점 등도 특검은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삼성에 유리한 사안이면, 특검은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로 엮는 연결고리로 악용하였습니다. 이처럼 특검 수사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 등 좌파세력이 주장하는 「정경유착 프레임」에 맞춰, 꺾맞추기 식으로 이뤄졌으며 검찰은 특검의 이러한 건강부회식 궤변을 검증하지 않고 대통령 구속 영장에 차용하였습니다.

### 5.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성명서를 특검은 로비활동으로 각색

가. 특검이 승계 작업의 하나로 꼽은 것이 원샷법 추진입니다. 원샷법은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새누리당 총재인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전 방위적으로 행사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나. 특검이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을 비롯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압력 행사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검이 해당 국회의원들을 조사했다는 기록은 특검의 「증거 목록」에 없습니다.

다. 제3자 뇌물죄의 전제 조건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입니다. 특검은 전경련이 2015. 11. 25. 경제 5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발표한 “조속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입법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서와 전경련이 같은 해 12. 21. 발표한 “노동개혁법 및 경제 활성화법 입법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부정한 청탁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검은 전경련과 경제 5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른 정상적인 활동을 로비로 각색한 것입니다.



## 「거짓과 진실」

라.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의 참고자료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약칭)이 제출한 의견서를 증거에 포함시켰습니다. 민변이 어떤 성향의 단체인지에 대해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특검이 이념성향이 뚜렷한 특정 변호사 단체인 민변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채택했다면, 당연히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협의 의견서도 참고자료로 채택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대한변협 의견서는 「증거 목록」에 첨부돼 있지 않습니다.

## 6. 특검의 증거는 절반 이상이 언론의 허위 기사

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증거는 거의가 언론에 보도된 기사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특검이 2017. 2. 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서원 피고인을 뇌물죄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특검의 「증거목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증거목록」은 증거서류의 제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나. 특검의 「증거목록」은 A4 용지로 3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하지만 첨부된 증거서류의 절반 이상은 오보로 밝혀진 기사들입니다. 예컨대 「증거목록」 236쪽에 ‘최서원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 증거라며 제시된 것은,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2016. 9. 20.자 한겨레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이 2016. 9. 20.에 보도한 기사가, 최서원이 미르 및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돼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의 위 기사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한겨레신문 특별취재반이 지은 ‘최순실 게이트/기자들, 대통령을 끌어내리다’ 라는 책에 의하면, 한겨레신문 특별취재반 기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의 박성오 비서관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동춘 이사장의 이력서를 통해, 정동춘 이사장이



서울대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CRC운동기능회복센터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사지센터 주인인 것처럼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제목을 달았는데, 제목을 누가 붙인지에 대해서 책에는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사 제목의 경우, 통상적으로 특별취재반 반장이 붙입니다. 특별취재반 반장은 김의겸 기자입니다.

라. 특검의 「증거목록」에 방대한 양의 언론 기사가 증거서류로 첨부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언론의 「기획 폭로」에 의해 시작되고 검찰과 특검의 「기획 수사」로 이어졌음을 반증하는 증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증거로 수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기사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모아 놓은 것인지를 검증해야 함에도, 특검이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흔적은 수사기록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거 숫자를 늘리기 위해 온갖 신문 기사들을 기계적으로 오려붙여 놓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언론 환경에서 언론 기사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언론사의 이해에 맞는 주장을 기사로 포장한 것이 대부분임을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바. 특검의 위와 같은 행태는 「증거목록」에 기재된 수많은 언론사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증거목록」에 등장하는 언론사 이름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영남일보,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시사저널, 일요신문, 전자신문, 민족의학신문, 시민사회신문, 법률신문, 머니투데이, 조세일보, 한국경제매거진, 아주경제, 뉴시스, 오마이뉴스, 쿠키뉴스, 뉴스토마토, 더스쿠프, 노컷뉴스, 뉴스웨이, 닥터스뉴스, 헤드라인뉴스, 시사위크, 미디어펜, 지디넷코리아, 이뉴스 투데이, 머니S, 아시아투데이, 뉴스핌, 아이뉴스, 메트로, 팩트올” 등이고, 방송은 “SBS, 연합뉴스, JTBC, TV조선” 등입니다.



사. 특검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분석한 이재용, 최서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론 보도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증거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검찰을 향해 “증거목록에 왜 이렇게 신문기사가 많으냐”고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식의 언론 기사들을 무분별하게 증거자료로 제출한 특검의 행태는,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국가형벌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거짓언론에 의해 조성된 여론과 군중심리에 기대고 편승하여 국가형벌권이 작동되는 현상을 ‘인민재판’이라 칭합니다.

## 7. 승마 지원 증거서류는 언론 기사들

가. 특검은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모하여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비로 삼성그룹에서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각종 언론 기사와 삼성전자의 독일 송금내역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했습니다.

나. 증거로 첨부된 기사는 ▲삼성 지원 이유 문자, 대통령이 정유라 아낀다(2016. 11. 6.자 SBS 보도), ▲최서원 딸 독일 연수에 승마협회 거액 지원, 중장기 로드맵 수립(2016. 10. 12.자 경향신문), ▲승마협회-삼성 주연의 승마공주 구하기(2016. 10. 13.자 노컷뉴스), ▲승마협, 삼성에 마장마술 186억원 지원 요청 문건 보내(2016. 11. 3.자 쿠키뉴스), ▲최순실, 현명관 마사회장과 전화 통화하는 사이(2016. 11. 7.자 조선일보) 등인데, 모두 사실이 아닌 기사들입니다. 이 사건 당시, 현명관 회장 부인이 최순실의 측근이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게 대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2018. 11. 2.에 있는 선고에서 “김현권 의원은 명예훼손에 따른 7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용역계약서」를 근거로 독일계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77억 9735만 원을 송금했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주장했으나, 최서원의 변호인 오태희 변호사는 “용역계약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서류이며, 돈을 송금 받은 독일계 회사는 현지법에 의거해 독일인이 회사 대표이며, 회사에 등록된 독일인 공인 세무사가 세금 문제를 처리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 8. 증거는 찾지 않고 수사협조자의 이해와 주장만 따라간 특검 수사

가. 검찰의 제1기 특수본은 미르 및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도 검찰 수사와 같은 맥락에서 결정문을 작성했습니다. 특검이 출범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 결과는 검찰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사뭇 다릅니다.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운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나.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281억 9735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특검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뇌물을 주었다는 이재용 부회장 역시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뇌물수수와 관련된 직접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되자 특검은 최서원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담당한 박상진 대한승마협회 회장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 제3자의 진술과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도한 각종 추측성 기사들을 정황 증거로 제시하고, 대통령과 최서원은 경제공동체라는 가공의 논리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서원을 뇌물로 엮었습니다.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은 특검 발표를 인용, 보도한 언론



##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짓의 산

을 통해 유포된 것이 사실인데도 특검 측 공판 관여검사들은 이 사건 법정에서 경제공동체라는 것은 언론의 자의적 보도이지,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며 스스로 철회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특검과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가 안중범 업무수첩인데. 이 수첩이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총론)」 편에서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라. 국회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노승일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과 삼성그룹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회청문회에 출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노승일의 주장은 국회방송과 YTN, 일부 종편의 생중계를 통해 온 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는 노승일 주장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마. 특검의 「증거목록」에는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등이 수시로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고, 이들이 제출했다는 각종 자료들이 증거로 첨부돼 있습니다. 그러나 노승일이 제출한 자료는, 증거라는 이름에서 차이가 날 뿐, 박원오 컴퓨터에서 압수한 자료와 같은 내용입니다. 노승일, 고영태 등이 특검에 출석한 사실은 특검에 우호적인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만큼 은밀하게 이뤄졌습니다.

### 9. 특검 신자용 검사, 최서원에게 “삼족을 멸하겠다”고 겁박

가. 이런 가운데 특검 소속 신자용 부장검사가 피조사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최서원에게 “당신과 대통령 사이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하지 않으면 삼족(三族)을 멸할 것이며, 당신의 모든 일가친척이 이 사회에서 발붙이며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나. 이 사실은 최서원의 변호인 오태희 변호사가 2016. 12. 30. 신자용 부



장검사의 거친 말과 강압적 수사를 항의하는 의견서를 특검에 보내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신자용 부장검사의 발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오태희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특검이 최서원을 2016. 12. 24.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한 것은 심야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며, 최서원이 심야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조사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 오태희 변호사는 의견서 말미에 “특검 수사팀의 부장검사가 피조사자에게 충격적인 폭언을 한 데 대해 특검 내부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조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 및 부부장 검사를 수사라인에서 제외하는 등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조사자는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으며,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피조사자는 묵비권 등 헌법에 부여된 모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10. 경제공동체로 묶으려 최서원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심야 조사

가. 최서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016. 12. 24.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사이입니다. 최서원은 특검의 1차 소환 요청에 따라 12. 24. 오후 1시50분쯤, 수갑을 찬 채 서울구치소 보안과 소속의 여성 교도관들과 함께 특검에 도착했습니다. 최서원은 특검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와 잠시 얘기를 나눈 뒤, 오후 2시부터 특검 사무실 17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실에서 고흥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 오태희 변호사는 최서원의 변호인 자격으로 특검 수사에 입회했습니다. 그런데 고흥곤 검사가 오태희 변호사에게 “오늘은 최서원씨의 대략적인 입장을 들어보고, 정식 조사는 다음 날부터 하겠다”며 변호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



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조사」가 아닌 단순한 「면담」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 수사기관에서의 「면담」과 「조사」는 개념이 다릅니다. 수사관이 수사 초기에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 피조사자와 자유로운 대화 시간을 가지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면담」이며 일문일답식의 신문 내용을 신문조서에 기록하는 행위가 「조사」입니다. 때문에 검사가 피조사자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인은 자리를 피해주는 게 법조계 관행입니다. 그러나 고흥곤 검사는 검찰 제1기 특수본에서 이미 최서원을 조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서원의 입장을 또 다시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흥곤 검사는 면담을 이유로 변호인의 입회를 불허했습니다.

라. 오태희 변호사는 조사실 밖에서 면담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면담은 일종의 상견례 자리이므로 대부분 20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서원에 대한 면담이 2시간가량 계속되자, 오태희 변호사가 이를 항의했고, 그제서야 고흥곤 검사는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마.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고흥곤 검사는 최서원에게 “검찰에서의 당신 진술은 전부 거짓말이다. 우리가 새로운 사실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진실을 이야기하라”며 다그쳤다고 합니다. 최서원 사건은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룰 사안이지, 특검에서 새롭게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특검이 범죄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최서원을 심문하고 추궁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고흥곤 검사는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궁하지 않고,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 15개 사안에 대해 하나씩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최서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고흥곤 검사가 꼬치꼬치 캐묻는 바람에 특검의 1차 조사는 밤 10시20분경 끝났다고 합니다.



바. 고흥곤 검사는 오태희 변호사에게 “오늘 조사는 끝났습니다. 최씨는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낼 테니 변호인은 귀가해도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오태희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을 나온 시각은 밤 10시30분이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고흥곤 검사는 최서원을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고흥곤 검사는 최서원을 신자용 부장검사 방으로 데려갑니다. 신자용 부장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고흥곤 검사의 상급자입니다. 최서원에게 “삼족을 멸하겠다”고 겁박한 사람이 신자용 부장검사입니다.

사. 최서원이 변호인 측에 밝힌, 당시의 강압수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돌아가신 뒤, 담당검사(고형곤)가 저를 부장검사(신자용)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2시간 정도 또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이 아닌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신자용 부장검사가 저에게 “당신과 대통령 사이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삼족을 멸할 것이며,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 딸 정유라와 당신 손자는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일가친척을 샅샅이 조사하여 이 사회에서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처럼 험한 말을 들은 것은 처음입니다. 작년(2016년) 10월 31일에 긴급 체포되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검찰 조사를 받느라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그런 함한 말을 들으니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특검 사무실을 나와 서울구치소를 향해 출발한 시각이 12월 25일 오전 1시경이었습니다. 신자용 부장검사가 저에게 폭언한 말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 교도관들도 다 들은 모양입니다.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여성 교도관들이 저에게 “어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 그 이후 최서원은 특검의 거듭된 소환 요청에 “삼족을 멸한다는 폭언을



##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짓의 산

들은 이후, 무섭고 두려워서 특검에 나가지 못하겠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특검에 출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3차례 제출했습니다. 최서원에 대한 특검의 무리한 강압 수사는 대통령과 최서원을 경제공동체로 묶아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특검이 경제공동체라는 어색하고 불합리하기 그지없는 용어까지 동원하여 무리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한푼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임을 증명한다 할 것입니다.

### 1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가.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한 것은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고, 장관의 지시를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을 구속했으나, 대법원 제2부는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나. 특검은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모든 기사들을 증거물로 첨부했습니다. 당시 많은 언론에서 “삼성물산의 주식 11.21%와 제일모직의 주식 4.84%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보다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던 소액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하는 바람에 통과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 12. 이재용 사건 항소심은 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판결

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은 판결문에서 “특검이 포괄적 내용의 현안을



이루고 있다는 개별 현안들이 그 진행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은 승계 작업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하여 위와 같은 순서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다는 점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 특검이 “직·간접적으로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항소심은 “개별 현안들의 진행 과정에 따른 결과를 놓고 평가할 때, 그러한 효과가 확인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확인된 결과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에 따른 여러 효과(예컨대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 합리화 등)들 중의 하나일 뿐이어서 결과적으로 확인되어진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는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성을 갖는, 위 개별 현안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의미의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 항소심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이재용이 개별 현안에 관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의 단독 면담 시 또는 각 지원 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해당 개별 현안 해결에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승마, 영재센터 및 재단에 대한 지원이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 내지 양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라. 이재용 사건(사건번호: 2018도2738호)은 현재 대법원 제3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과 이재용 사건의 항소심 판단내용은 이 쟁점뿐만 아니라, 다른 쟁점에 있어서도 달리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과 함께 대통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이제라도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다.

### Ⅲ. 정동구 이사장이 밝힌 K스포츠재단 설립의 진실 및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 1. 정동구 이사장은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체육계 원로

가.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 정동구는 1961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1964년 제18회 도쿄올림픽에서는 라이트급 6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를 그만둔 1973.경부터 국가대표 전임 코치를 역임했고, 1977.경부터 2007.경까지 한국체육대학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교수로 재직하던 1992년경부터는 한국체육대학 총장을 맡았습니다. 정동구 이사장은 10대, 20대 때는 국가대표 선수를, 30대에는 국가대표 코치를, 그 다음에는 한국체육대학 교수로 35년간 재직한 체육계 원로입니다.

나. 정동구가 안종범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 연락을 받은 것은 2015. 12. 19.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종범은 “남북 스포츠 교류와 체육인재 양성, 한국 스포츠의 세계 홍보 등을 위한 재단법인을 전경련에서 설립할 예정인데, 비상근 이사장직을 맡아 달라”고 제안합니다.

다. 정동구는 2017. 2. 14.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맡기로 한 것은 안종범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태겸 검사가 증인 정동구에게 “피고인 안종범으로부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재단이며, 대통령이 증인을 이사장으로 지명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구체적인 조건도 따져보지 않은 것이지요”라는 묻자, 정동구는 “대통령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전경련에서 기금을 대서 이런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저도



##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짓의 산

우리 한국에서 선수 출신들이 선수 때는 화려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너무 비참하고 불쌍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합니다.

라. 김태겸 검사가 계속해서 “하지만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가 된 사안이고 증인도 그와 같이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수락한 것이 맞습니까”하며 대통령과 연관시키려고 했으나, 정동구는 “대통령이라는 말은 안 했고요, 경제수석이니 까 제가 신뢰할 만 했죠”라며 부인했습니다.

마. 안종범이 대통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설립과 임원진 명단을 전달받게 2015. 12. 20.이라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동구가 안종범에게서 이사장직 권유를 받은 것은 그보다 하루 전입니다. K스포츠재단 상임 이사 김필승이 안종범을 만난 것도 2015. 12. 19.이라는 사실은 「직권파기를 위한 위견서(총론)」에 기술한바 있습니다.

바. 정동구는 법정 증언에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만난 일도 없으며, 언론 보도 이후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블루K라는 이름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최서원이 K스포츠재단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재단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2.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의 사기행각을 저지한 사람이 정동구 이사장

가. 정동구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 1. 16. 초대 이사장에 취임했으나 보름 후인 2. 1. 이사장직을 그만둡니다.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등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연구용역비로 빼먹으려 하는 것을 저지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안종범이 고문직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나. 박헌영은 고영태, 노승일의 한국체대 2년 후배로, K스포츠재단 과장이었습니다. 검찰 조서에 의하면, 박헌영은 2003. 9.경 한국체대를 졸업하고 퍼스트커뮤니케이션즈 프로모션 팀에 입사하여 2년간 근무한 뒤, ING생명보험에서 보험 일을 하였습니다. 그 후 리더스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에서 스키 행사 및 기획 관련 일을 하였고, 대명리조트에서 스키강사로 1년 정도 근무한 뒤 놓고 있던 중, K스포츠재단 과장으로 입사합니다.

다. 입사 후 박헌영은 K스포츠재단과 그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더블루K 사무실을 오가며 두 군데서 일을 하였습니다.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은 검찰 조사에서 “더블루K는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빼먹기 위한 창구”라는 허위 진술을 하고, 기자들에게 이를 퍼뜨린 장본인들입니다. 이들 3사람은 실제로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빼먹으려다 정동구 이사장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사실이 검찰 조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 3. 허위 용역제안서 작성자는 박헌영

가. 박헌영은 K스포츠재단에 입사하고 얼마 안 돼, 고영태의 지시로 2건의 연구용역 제안서를 작성해 K스포츠재단에 제출합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연구용역 제안서 작성 시기가 2016. 2.경이라고 기재했는데, 이는 정동구 이사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진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날짜를 2016. 2.경이라고 해 놓으면 정동구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이후가 되어, 정동구가 구체적으로 밝힌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과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이 시도했던 사기행각의 실체에 대한 진술내용이 뚜렷한 쟁점으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나. 박헌영이 작성한 2건의 연구용역 제안서 중 하나는 (주)더블루K 명의의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수준 향상과 저변 확대를 위한 가이드러너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4억 620만원)」라는 제안서이고, 다른 하나는 K스포츠재단 명의의 「전국 5대 거점 지역별 각 종목 인재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개선방안 연구(3억 720만원)」라는 제안서입니다. 박헌영은 2개의 제안서를 K스포츠재단에 제출하고 7억 1,340만 원을 청구합니다.

다. 박헌영은 2개의 제안서를 자기가 작성했다는 사실은 검찰에서 시인했으나, 최서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합니다.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의 주장대로 (주)더블루K의 실소유주가 최서원이고,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사람이 최서원이라면 K스포츠재단에서 연구용역비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이 고영태 등의 진술에 의존하여 설정한 범죄사실 자체에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라. 검찰은 모순된 주장을 제공한 사람들의 진술내용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의도 등을 감안하여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연구용역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박헌영에게 “K스포츠재단에 제출한 연구용역 제안서가 왜 하나는 (주)더블루K 명이고, 또 하나는 K스포츠재단 명으로 되어 있느냐”라든지, “진술인의 주장대로 최순실이 (주)더블루K의 실소유주고 K스포츠재단 운영을 주도한 사람이 맞다면 왜 연구용역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나”라는 점을 물어보았다면, 쉽게 실제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런 당연한 의문을 추궁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은 채, 최서원에게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빼먹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마.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이 공모해서 벌인 사기행각은 정동구 이사장이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 재임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동구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막 설립된 K스포츠재단이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걸음마도 못 뎀 아이가 뛰려고 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정현식 사무총장과 노승일 사업부장에게 “그런 말을 다시는 꺼내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동구 초대 이사장이 밝힌 진술내용으로, 검찰은 박헌영 등의 거짓진술과 사



실왜곡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정동구의 진술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법원 역시 박헌영 등의 진술 내용이 허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은 채 모호한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4. 정동구를 이사장에서 물러나라고 한 사람은 안종범

가. 연구용역비 제안을 거부한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 정동구 이사장은 안종범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습니다. 안종범은 정동구 이사장에게 “이름이 너무 알려져 있으시니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을 맡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사장에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에게 고문을 맡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나가라는 통보와 다름없습니다.

나. 정동구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의 요구가 매우 불쾌하고 황당했기 때문에 2016. 2. 1.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동구 이사장의 사표는 2016. 2. 23.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어 석 달가량 공석으로 있다가 2016. 5. 13. 정동춘이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합니다.

다. 정동구 진술조서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 현판식 날 기자들의 영상 촬영 요구를 제지한 사람은 정현식 사무총장입니다. 정현식은 안종범이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할 때 학생이었습니다. 정동구, 김필승의 진술을 종합하면,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안종범이 주도했습니다. 안종범은 체육계에서 존경받는 원로인 정동구를 무보수, 비상근 이사장으로 모시기는 했으나 정동구에 대한 통제가 힘들어지자 취임 보름 만에 물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안종범, 정현식, 박헌영이 롯데그룹, 부영그룹, SK그룹 등에 돈을 요구한 사건은 모두 이사장 공석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라. 정동구 이사장의 검찰 진술조서가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검찰이 공소장에 최서원의 사기미수 사건 발생 시기를 2016. 2.경이라고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정동구 이사장은 그 전에 이사장직을 퇴임했기 때문에 검찰이 설정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아, 수많은 기록 속에 묻혀 버린 것입니다. 최서원의 사기미수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의 이 부분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밝힌 무죄이유는 정동구 이사장이 밝힌 실제적 진실을 비껴나간 것입니다.

#### IV. 노승일의 경력과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 1. 노승일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모른다”고 두 차례나 부인

가. 노승일은 이 사건에서 특검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서원의 딸 정유라 등을 승마 뇌물수수로 엮는데 결정적으로 협력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노승일의 진술은 본인이 “감지했다”는 것이지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노승일은 이 사건의 최초 폭로자 고영태와 한국체육대학 95학번 동기입니다.

나. 검찰 조서에 의하면, 노승일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배드민턴을 시작한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1995년 전국 체전에 서울 대표선수로 출전해 단체전에 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노승일은 대학 졸업 후인 1999. 8.경부터 그 해 12.경까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설악중학에서 체육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2002. 2.경 메리츠종금증권에 입사해 2013. 3.경까지 11년간 근무했습니다. 담당 업무는 고객에게 계좌 개설을 권유하고, 주식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이었습니다.

다. 노승일은 메리츠종금증권을 그만 둔 2013. 4.경부터 2015. 7.경까지는



서울 노원구, 은평구 및 경기도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에서 배드민턴 코치생활을 하다가 2015. 8. 11. 독일로 출국, 3개월가량 체류한 뒤 11. 30. 귀국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후인, 2016. 1. 11. K스포츠재단에 입사했습니다.

라. 노승일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2016. 10. 25.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1차 국민담화를 발표한 날입니다. 당시 노승일의 직책은 K스포츠재단 사업기획부장입니다. 노승일은 검찰 조사에서 “K스포츠재단에 입사한 것은 강사민 부장이 같이 일 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며, 최순실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검사인 최재순 검사가 “최순실을 아느냐”고 두 차례나 물었지만 노승일의 대답은 “모른다”였습니다. 검사가 “김성현을 아는 가요”라고 묻자, 노승일은 계속해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부인으로 일관하자 검사는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도 모른다는 말이나”고 추궁을 합니다. 이에, 노승일은 “제가 언제 통화를 하였는지 보여 주세요”라며 반발하다, 검사가 노승일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조회했다고 알려주자, 그때서야 “안다”고 시인하고 김성현이 미르재단 사무총장임을 밝힙니다.

마. 그러나 노승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 3. 5.에 출간된 ‘노승일의 정조준’이라는 책(지은이; 노승일)에서는 최재순 검사와의 만남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이 책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보면, 노승일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재순 검사에게 “내 매형의 사촌동생이 이OO 검사”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바. 그러자 최재순 검사는 “노 부장님, 정말 인연입니다. 제가 이 검사님을 가장 존경하며,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분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안 했지만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노 부장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노승일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그가 자랑삼아 쓴 책에서 밝힌 내용은 이처럼 같지가 않습니다.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조사받았던



정황까지 상황이 달라지면 수시로 번복하기 때문에 노승일 진술은 신뢰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 2. 노승일이 독일로 출국한 것은 “이민을 가기 위해서”

가. 1차 조사에서 최재승 검사가 노승일의 출입국기록을 제시하고 독일 출국 목적에 대해 묻자, 노승일은 “이민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독일 뒤셀도르프로 가서 지인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독일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자영업으로 무엇이 적당한지 등을 검토하였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노승일은 그 후 고영태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고영태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꿉니다. 노승일은 독일 출국 목적에 대해 “고영태가 저보고 독일에 가서 최순실 회장의 코어스포츠 설립을 도와, 일해 볼 것을 제안하여”라는 식으로 번복합니다. 삼성전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코어스포츠의 법인 설립과 운영을 노승일 본인이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나. 독일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독일어나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최서원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에게 “증인은 독일어나 영어를 구사할 줄 아나요”라고 물어보자, 노승일은 “할 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독일어를 할 줄 모르는 증인이 독일에 어떻게 법인 설립을 하고, 운영을 했느냐”고 추궁하자, 노승일은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 출신 변리사를 알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법인 설립은 변호사 업무이고, 변리사는 특허 분야 전문인입니다. 노승일은 변호사가 하는 일과 변리사가 하는 일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3. 노승일의 독일 내 역할은 최서원의 운전기사

가. 노승일은 2015. 8. 11. 독일로 출국하여 2015. 11. 30. 귀국합니다. 독



일에서 체류한 기간은 3개월 정도입니다. 노승일이 독일로 출국할 당시의 사정과 독일에서 한 일은 그가 쓴 ‘노승일의 정조준’이라는 책에 소개돼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노승일은 증권회사 다닐 때, 월급이 100만 원이었으나,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돈은 88만 원이었고, 늘어나는 빚을 감당 못해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증권회사를 그만 둔 뒤에는 배드민턴 레슨코치로 일하며 돈을 벌었고, 새벽 2시부터 다음 날 오후 2시까지는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청과물 시장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나. 당시 힘들었던 사정을 노승일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채도 많고 갚을 곳도 많았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다. 잠을 안자고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갚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나는 살고 싶었다. 배드민턴 레슨코치 수입 180만 원에 청과시장 200만 원을 합쳐도 부채를 갚기에는 빠듯했고, 월세를 낼 수 없어 집주인 아주머니가 전화해서 방을 빼달라고 할까봐 늘 걱정을 하고, 전기료와 가스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는 독촉이 들어와야 납부를 했다. 월세 보증금 300만 원은 독일로 향할 때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월세가 밀려도 딱 한 번 전화해 주신 집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뿐이다.”

다. 생활고에 시달려 두 번이나 이혼한 노승일은 독일로 이민 갈 결심을 합니다. 검찰에서 1차 진술한 “독일로 이민가기 위해서”라는 노승일의 진술은 거짓이 아니며, “독일 뒤셀도르프에 산다는 지인”은 노승일의 여자 친구를 말합니다. 노승일은 독일 체류비자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최서원의 독일 내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라. ‘노승일의 정조준’이란 책에 의하면, 노승일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독일로 갔습니다. 노승일이 독일에서 3개월 동안 한 일이라고는 최서원을 공항까지 태워주거나 픽업해 오고, 독일 내에서 최서원이 원하는 곳으로 운전하



는 일이었다고 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노승일의 봉급은 코어스포츠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마. 그 얼마 뒤, 노승일은 최서원에게 “뒤셀도르프에 사는 여자 친구와 독일에서 살려면 취업비자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최서원은 “한국에 있는 당신 자식들은 누가 책임 질 것이냐,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라”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바람에 노승일은 최서원 운전기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4. 노승일, 독일에서 박원오를 만났다

가. 노승일은 독일 예거호프 승마장에 살 때,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박원오를 만납니다. ‘노승일의 정조준’이란 책에는 박원오가 노승일에게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원장님”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노승일은 자기 책에 박원오라는 실명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박원오와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입니다. 박원오가 특검에 출두해 최서원과 삼성전자 관계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때, 노승일이 특검에 수시로 들락거리며 박원오를 만났다는 사실은 검찰 조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나. 노승일은 검찰에서 7번 조사를 받았는데, 삼성과 코어스포츠 관계에 대해 진술한 것은 한 번뿐입니다. 2016. 10. 30.에 있었던 조사에서 노승일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훈련지원금 중 전부를 정유라 1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합니다. “알고 있다”라는 진술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전문(傳聞) 증거에 해당합니다.

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노승일을 상대로 삼성과 최서원 관계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노승일이 아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승



일은 2017. 1.경 특검에서 박원오를 만난 후부터, 박원오의 허위 주장을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라. 2017. 1. 9.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노승일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질문에 “삼성과 최서원 관계는 정경유착이고, 코어스 포츠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손혜원 의원은 그 근거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노승일의 무책임한 주장은 최서원이 국내 이목을 피해 독일에서 삼성그룹과 정경유착을 한 것처럼 비쳐졌습니다.

마.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노승일에게 “일전에 어느 방송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통합된 다음에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통합재단 이사장을 맡을 계획이라고 주장을 하셨지요”라고 물은 뒤, “그 근거가 무엇이었고,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노승일이 우물거리자 안민석 의원은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면 본인의 판단입니까”라고 재차 추궁합니다. 이에, 노승일은 “제가 그 부분은 조금씩 감지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되자 안민석 의원은 “감지를?”이라며 허탈한 반응을 보였는데, 노승일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합니다.

바. 노승일이 최재순 검사 앞에서 1차 조사받을 때 밝혔다는, “매형의 사촌동생 이OO 검사”는 특검에 파견된 이복현 검사를 뜻합니다. 이복현 검사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조사할 때 윤석열 검사 밑에서 일했으나, 그 후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겼고, 윤석열이 특검 수사팀장이 되면서 특검에 발탁된 검사입니다.

사. 노승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복현 검사를 “매형” 또는 “매형의 사촌동생”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법정 신문에서 이복현 검사와의 관계를 묻자, 노승일은 “사촌이 검찰에 근무하고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다. 만약 이복현 검사가 노승일 주장대로 친인척 관계가 맞다면 이복현 검사는 수사 라인에서 배제되는 것이 검찰 사무규칙입니다. 노승일의 진술은 어느 것 하나 신빙성도 없고, 구체성이 없이 얼버무리는 내용인데도, 합리적 검증절차를 뛰어 넘어 그대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 추후 제출하는 각론-2에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

2018. 11. 13.

제출자 「거짓과 진실」  
대표기자 우 종 창  
외 5인

대법원 제2부 귀중

